

기후테크



◆ 서울기후테크산업지원센터 INSIGHT ◆

2026년 3호

신기술(NET)·신제품(NEP) 지정제도 현황 분석

2026.7



서울기후테크산업지원센터



제10기 수업

Chapter 1 개요



1.1 신기술(NET)·신제품(NEP) 지정 제도

- ★ (목적) 신기술(NET)·신제품(NEP) 지정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과 이를 적용한 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해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분산·중복되어 있던 부처별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통합·정비하기 위해 도입·개편
 - » 2026년 6월 3일부로 신제품(NEP) 제도 명칭이 “신제품 인증제도”에서 “신제품 지정제도”로 변경
- ★ (추진 배경) 신기술(NET)·신제품(NEP) 지정제도 연혁
 - » 1993년 기술개발촉진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에 대해 정부가 우수성을 인정하는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가 제정·운영되기 시작

표 1 신기술·신제품 지정제도 연혁

연도	주요 내용	제도적 의미
1993	개발기술의 실용화 촉진요령에 따라 신기술(NET) 인증제도 도입	신기술 정부인정 제도의 출발점
1995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에 품질인증제도 반영, 기술표준원이 시행	기술 인증과 산업경쟁력 정책의 연계 강화
2006	5개 부처 7개 인증제도를 NET·NEP 인증으로 통합	범부처 통합체계 확립의 전환점
2008	NET·NEP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 운영	행정 운영체계 일원화
2009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전부개정	심사·사후관리·구매촉진 근거 구체화
2026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53호 개정 및 NET·NEP 명칭의 ‘지정’ 전환	현행 ‘지정제도’ 체계의 공식화 제도 구조는 종전과 동일(명칭 정비)

그림 1 신기술 지정 표시(NET 마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5 및 제19조

그림 2 신제품 지정 표시(NEP 마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 4

1.2

신기술(NET) 지정 제도

★ ‘신기술 지정’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 기술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심사 절차를 거쳐 신기술로 공식 지정하는 제도를 의미함¹⁾

» 이는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해당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높여 초기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

» 지정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이루어지며, 지정된 기술은 ‘지정 신기술’로 관리됨²⁾

★ ‘신기술’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의미함³⁾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제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⁴⁾

» 실증화 시험을 통해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 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 시킬 수 있는 기술⁵⁾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 기술⁶⁾

» 지정 신기술의 표시는 관련 요건에 따라 「New Excellent Technology」를 형상화한 신기술 지정표시(NET 마크)를 사용 가능

표 2 신기술 지정 운영 주체

기관	업무명
국가기술표준원	• 관련법령 제·개정 및 운영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정 • 신기술 지정서 발급(산업통상부 장관) • 지정 기술(제품)의 상용화 지원시책 강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청 서류의 검토·접수 및 신청기업과의 연락 •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행정,관리 • 심사결과의 발표·통보·홍보 및 지정서발급 등에 관한 행정사무 • 지정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 연계지원제도의 발굴 및 제도화 • 기타 운영 및 사후관리

1) 산업통상부(2026), “신기술(NET)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조 1항

2) 산업통상부(202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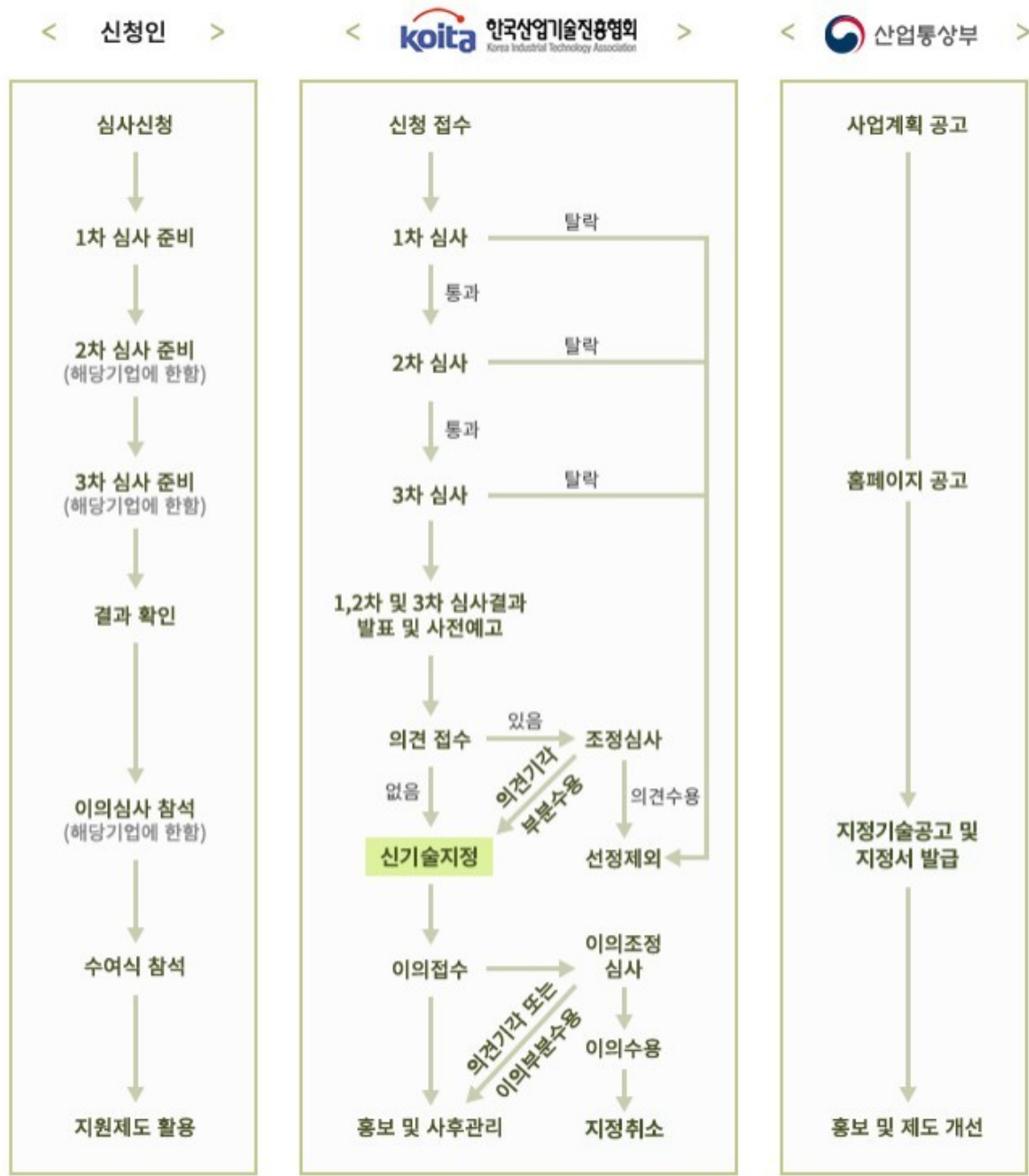
3) 산업통상부(202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1항

4) 산업통상부(202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2 2항

5) 산업통상부(2026), 위의 문헌

6) 산업통상부(2026), 위의 문헌

그림 3 신기술(NET) 지정 업무흐름도



※ 출처: NET마크 홈페이지(<https://www.netmark.or.kr/>)

1.3

신제품(NEP) 지정 제도

★ ‘신제품 지정’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우수 제품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심사 절차를 거쳐 신제품으로 공식 지정하는 제도임

» 신제품 지정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제품의 성능·품질·실용화 수준을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신기술 지정과 구분됨

» 신제품 지정은 유효기간(3년)을 전제로 운영되며⁷⁾, 지정된 제품은 ‘지정 신제품’으로 관리됨

»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우수 제품을 지정함으로써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정 신제품의 구매촉진을 통해 초기 시장 진입과 판로 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 ‘신제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으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의미함⁸⁾

» 실용화란 사용자에게 안정된 품질의 신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신제품 본래의 용도로 실제 사용되고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것을 의미함⁹⁾

» 지정신제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신제품으로 관리됨¹⁰⁾

» 지정신제품의 표시는 「New Excellent Product」를 형상화한 신제품 지정표시(NEP 마크)를 사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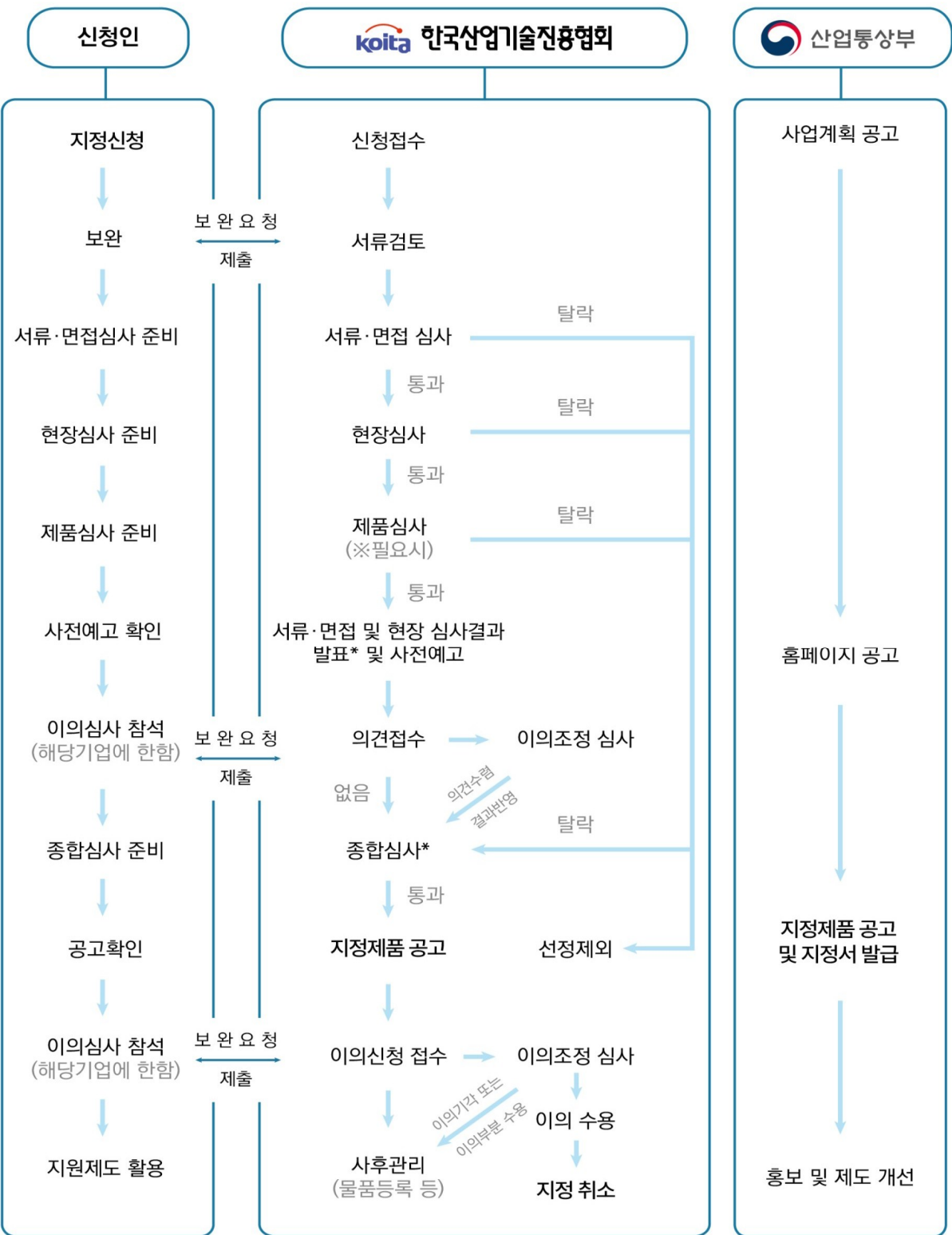
7) 산업통상부(202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1항

8) 산업통상부(202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1항

9) 산업통상부(2026), “신제품(NEP)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 2항

10) 산업통상부(2026), “신제품(NEP)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 4항

그림 4 신제품(NEP) 지정 업무흐름도



*탈락기업에 대한 개별통보

※ 출처: NEP마크 홈페이지(<https://www.nepmark.or.kr/>)

1.4

NET와 NEP의 비교

★ NET와 NEP는 모두 우수한 기술·제품을 공적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제도이지만, 적용 대상과 활용 목적에는 차이가 있음

- » NET는 국내 최초 개발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기술의 우수성과 적용·상용화 가능성을 평가하므로 제품화 이전 또는 진행 중인 기업에 적합함
- » NEP는 신기술 또는 대체기술을 적용해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제품의 성능·품질과 실제 사용·판매 실적을 평가하므로 시장 진입 또는 공공구매를 추진하는 기업에 적합함

표 3 신기술(NET)·신제품(NEP) 비교

구분	NET	NEP
명칭	신기술 지정	신제품 지정
대상	국내 최초 개발 또는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 기술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초점	기술성, 적용성, 재현성, 발전성, 파급성	제품 성능, 품질, 실용화, 시장성, 구매 연계 가능성
기업 활용 단계	기술개발·상용화 준비 단계	제품화·시장 진입·공공구매 연계 단계
주요 활용 의미	기술 신뢰성 확보, 후속 연구개발 및 상용화 기반	제품 신뢰성 확보, 판로 확대, 공공구매 연계

※ 저자 작성

★ NET가 “기술이 충분히 새롭고 우수한가”를 중심으로 보는 제도라면, NEP는 “그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실제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성능과 품질을 갖추었는가”를 함께 보는 제도임

- » NET 지정은 서류·면접심사, 현장심사, 종합회의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며, 기술적 우위와 적용 가능성, 성능 재현성, 발전성·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 NEP 지정은 서류·면접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종합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며, 제품의 성능·품질 우수성, 신기술 기여도, 품질보증체계 및 실용화 가능성을 평가함

★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는 NET·NEP를 단순한 지정표시가 아니라, 기술개발·제품화 단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제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 기술개발 단계의 기업은 NET 지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핵심기술의 차별성·우수성과 적용 가능성을 입증할 특허·시험성적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 제품화 단계의 기업은 NEP 지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제품의 성능·품질, 실용화·판매실적, 품질보증체계와 공공시장 진입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함
- » 예비창업자는 향후 NET·NEP 지정에 대비하여 기술개발 단계부터 특허·시험성적서·성능 비교자료·시제품 검증·판매실적·품질관리체계 등 필수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음

1.5 NET·NEP 지정 신청 방법 및 활용 효과

★ NET·NEP 지정은 단순한 지정표시 획득이 아니라,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제품의 우수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시장·수요처에 설명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임

표 4 NET·NEP 지정 신청 방법 및 준비사항

구분	NET	NEP
신청 대상	국내 최초 개발 또는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 기술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신청 단계	기술개발·상용화 준비 단계	제품화·판매실적 확보 이후
주요 절차	신청·접수 → 서류·면접 심사 → 현장 심사 → 종합 회의 심사 → 지정	신청·접수 → 서류·면접 심사 → 현장 심사 → 제품심사 → 종합심사 → 지정
준비자료	기술설명서, 성능 검증자료, 시제품·적용제품 자료, 특허·시험성적서, 품질관리 자료 등	제품설명서, 공인시험성적서, 판매실적, 품질보증체계, 기존 제품 대비 성능·품질 비교자료 등
체크포인트	기술의 차별성·재현성·상용화 가능성	제품의 실용화 여부·시장 적응성·품질 안정성

※ 저자 작성

» 보유한 기술이 기술의 우수성, 적용 가능성, 상용화 가능성을 설명해야 하는 단계라면 NET를 검토하고, 제품화가 완료되어 성능·품질·판매실적·품질보증체계를 제시할 수 있는 단계라면 NEP를 검토할 수 있음

표 5 지정 효과 요약

구분	주요 효과
NET	기술 신뢰성 확보, 상용화 기반 마련, 기술거래 및 후속 연구개발 활용,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가능성 검토
NEP	제품 신뢰성 확보, 판로 확대, 공공구매 연계 가능성, 초기 시장 진입 기반 마련
공통	기업 기술·제품의 객관적 설명자료 확보, 투자자·수요처·공공기관 대상 신뢰도 제고, 사업화 전략 수립에 활용

» 다만, NET·NEP 지정이 곧바로 매출 증가나 조달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지정 이후에도 판로 개척, 수요처 확보, 조달 등록, 유지관리 체계, 후속 제품 개발 등이 병행되어야 함

Chapter 2 국내외 신기술/신제품 지정 제도



2.1 국내 신기술·신제품 지정 담당 기관 및 분야

★ (NET 담당 기관) 국내 신기술 지정 제도는 단일 기관이 모든 분야의 신기술을 일괄 담당하는 구조가 아니라, 산업·환경·건설·보건 등 다수 분야에서 개별 제도로 운영

표 6 국내 신기술 지정 분야 및 신청·담당 기관

분야	근거 법령	신청·접수기관
방재	「자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농림식품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산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보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건설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우수 물류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목재제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한국임업진흥원
농업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촌진흥청

★ (NEP 담당 기관) 국내 신제품(NEP) 지정제도는 신기술 지정제도와 달리, 분야별로 별도 신청·접수기관이 나뉘어 운영되는 구조가 아니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신제품 지정제도로 운영

» 신제품(NEP) 지정의 신청·접수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며, 지정신제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신제품으로 관리됨

표 7 국내 신제품 지정 분야 및 신청·담당 기관

분야	근거 법령	신청·접수기관
신제품(NEP)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제품(NEP)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이 적용되어 실제 사용·판매 실적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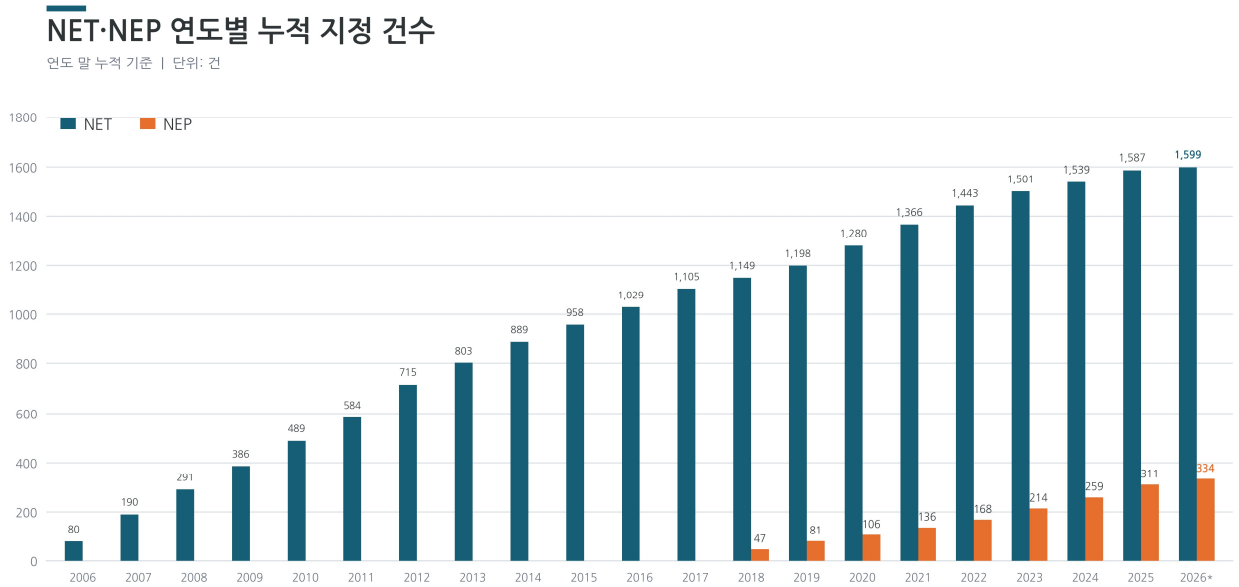
Chapter 3 NET·NEP 운영 현황 분석



3.1 연도별 지정 현황

원자료 기준 최근 3개년 지정 건수에서는 NEP의 비중이 확대됨

그림 5 연도별 지정 건수



* 2026년 수치는 2026.06.01까지의 누적치.

※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NET 현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제공받은 산업 신기술(NET)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본문에서 제시하는 NET 통계는 산업 신기술 분야의 지정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임

- » NET는 연간 지정 건수가 2012년 131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2023년 58건, 2024년 38건, 2025년 48건으로 과거 고점보다 낮은 수준을 보임
- » NEP는 2023~2025년 연간 45~52건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며, 2026년 수치는 6월 1일까지의 자료이므로 연간 추세 판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3.2

지역별, 기업 규모별, 분야별 지정 현황

★ 산업 신기술(NET)은 서울 누적 비중이 높지만, 신제품(NEP)은 경기 비중이 더 높음

표 8 지역별 지정 건수

구분	NET 누적		NET 유효		NEP 누적		NEP 유효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서울	569	35.58%	27	30.00%	70	20.96%	29	18.35%
경기	487	30.46%	28	31.11%	120	35.93%	67	42.41%
인천	63	3.94%	8	8.89%	19	5.69%	5	3.16%
기타	480	30.02%	27	30.00%	125	37.42%	57	36.08%
총지정 현황	1599	100.00%	90	100.00%	334	100.00%	158	100.00%

※ 서울 vs 기타 지역 건수 비교

- » NET는 누적 기준 서울이 569건으로 전국 1위였고, 경기 487건, 대전 92건이 뒤를 이었으며, 현재 유효 기준으로는 경기 28건, 서울 27건, 인천 8건 순
- » NEP는 누적 기준 경기 120건, 서울 70건, 인천 19건 순이며, 현재 유효 기준에서도 경기 67건, 서울 29건, 대전·전북·충남 각 8건으로 경기 우위가 매우 뚜렷함
- » 수도권 비중은 누적 기준 NET 70.0%, NEP 62.6%로 높았고, 현재 유효 기준도 각각 70.0%, 63.9%

★ NET·NEP 지정 건수는 중소기업이 많음

표 9 기업 규모별 지정 건수

구분	NET 누적		NET 유효		NEP 누적		NEP 유효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중소·벤처 단독 / 중소기업	976	61.04%	64	71.11%	316	94.90%	151	95.57%
대기업 단독 / 대기업	320	20.01%	8	8.89%	9	2.70%	5	3.16%
중견기업	0	0%	0	0%	8	2.40%	2	1.27%
연구기관·대학 단독	14	0.87%	1	1.11%	0	0%	0	0%
중소·벤처 공동	31	1.94%	1	1.11%	0	0%	0	0%
대기업 공동	114	7.13%	5	5.56%	0	0%	0	0%
대·중소 혼합 공동	89	5.57%	9	10.00%	0	0%	0	0%
산학연 혼합 공동	55	3.44%	2	2.22%	0	0%	0	0%
총지정 현황	1599	100.00%	90	100.00%	333	100.00%	158	100.00%

- » NEP는 누적·유효 지정의 95% 내외가 중소기업이며, NET도 중소·벤처기업 포함 비중이 누적 71.0%, 유효 84.4%로 나타나 두 제도가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사업화 수단으로 기능함

★ 기술 분야별로는 NET에서는 기계·소재, NEP에서는 전기·전자 분야의 지정 건수가 많음

표 10 분야별 지정 건수

구분	NET 누적		NET 유효		NEP 누적		NEP 유효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전기·전자	354	22.12%	19	20.88%	110	32.94%	48	30.38%
기계·소재	586	36.62%	20	21.98%	78	23.35%	33	20.89%
화학·생명	296	18.50%	23	25.28%	29	8.68%	10	6.33%
건설·환경	184	11.50%	17	18.68%	86	25.75%	45	28.48%
정보통신	134	8.38%	6	6.59%	27	8.08%	19	12.02%
원자력·신재생에너지	46	2.88%	6	6.59%	4	1.20%	3	1.90%
총지정 현황	1599	100.00%	90	100.00%	333	100.00%	158	100.00%

- ▶ NET 누적 지정은 기계·소재(586건), 전기·전자(354건), 화학·생명(296건) 순인 반면, 현재 유효 NET는 화학·생명 (23건), 기계·소재(20건), 전기·전자(19건), 건설·환경(17건)으로 고르게 분산되어 있음
- ▶ NEP는 누적과 현재 유효 모두 전기·전자와 건설·환경이 양대 축이며, 현재 유효 기준으로는 전기·전자 48건, 건설·환경 45건, 기계·소재 33건임

그림 6 기후테크 분야의 신제품(NEP) 지정 사례

	
생활 재활용 폐기물 파봉기 (주)다원산업	예측수명이 증대된 LED 등기구 (주)엘파워
	
응축기의 폐열을 이용한 3RT급 제습기 한국공조기술개발(주)	대류 냉각 기능이 포함된 BIPV 시스템 (주)알앤비테크놀로지

Chapter 4 요약 및 결론



4.1 기후테크 기업의 NET·NEP 활용 방향

★ NET·NEP 지정제도는 기후테크 기업이 기술개발과 시장진입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기술·제품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사업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 기술개발·실증 단계의 기업은 NET를 통해 기후기술의 차별성과 적용 가능성을 입증하고, 제품화가 완료된 기업은 NEP를 활용해 공공시장 진입과 판로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음
- » 기술 분야별 요구자료와 활용처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기존 기술 대비 우수성, 시험성적서, 특허, 현장 적용성 및 품질관리체계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함
- »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는 기술개발 초기부터 특허, 성능자료, 시제품 검증, 판매실적 등을 축적하고, 기술개발·실증 단계는 NET, 제품화·시장진입 단계는 NEP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다만 지정 자체가 사업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정 이후에도 수요처 발굴, 판로 개척, 조달 연계, 후속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자금 확보가 병행되어야 함

4.2 결론 및 제도 개선 방향

★ NET·NEP는 중소기업의 기술 신뢰성 확보와 제품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으며, 기후테크 기업이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

- » 두 제도는 중소기업 참여 비중이 높고 최근 지정 분야도 전기·전자, 건설·환경, 정보통신 등으로 다변화되어, 기후테크가 에너지·소재·ICT 등 다양한 산업에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줌
- » 기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명칭 변경과 경과조치를 명확히 안내하고, 기술개발부터 공공시장 진입까지 단계별 적합 제도와 준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 NET 지정 이후 기술 적용·제품화, 성능검증·판매실적 확보, NEP 검토로 이어지는 경로를 구체화하고, 기후테크 분야별 분류와 활용 사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 향후에는 신청 가능성 사전진단, 시험·인증기관 연계, 제출자료 검토, 공공구매·판로 상담과 함께 지정 이후의 매출·구매·투자·후속 제품화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실무형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제21154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6338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제00012호)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산업통상부 고시)(제2026-052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부 고시)(제2026-053호)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산업통상부 고시)(제2026-054호)

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산업통상부 고시)(제2026-055호)

KOIT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 서울기후테크산업지원센터 INSIGHT ◆

기후테크 이슈페이퍼



발간 호수 2026년 발간물 제3호

발간물 명 신기술(NET)·신제품(NEP)
지정제도 현황 분석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작성자의 개인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작성자 혹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우체국, 여의도포스트타워 14층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49 서울새활용플라자 2층 216호

Tel. 02-6261-0884